

2007년 6월 30일

슈와브 대사  
미합중국 무역대표  
워싱턴 디씨

슈와브 대사 귀하

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1장(투자) 부속서 11-나(수용)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협정의 목적상, 부속서 11-나(수용) 제1항의 “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”이라는 용어는 계약상의 권리와 제11.28조(정의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투자 상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김 현 종